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3

제출년월일 : 1998.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환경관리과 >

-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업무위임

< 환경지도과 >

○ 권한위임

- 운행차 검사대행자 지정 업무
- 년차보고서의 제출
- 청문 (단, 지방환경관리청장의 권한은 제외) 업무 신규위임

- 소음·진동규제법('97. 3. 7)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97. 6. 26) 대기환경보전법('97. 8. 28) 개정, 호소수질관리법('97. 8. 28) 제정 등 관련법규 변동에 따른 조문정비

< 경 제 과 >

- '97. 7. 1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령이 시행되어 “도·소매업진흥에 관한 업무”가 “대규모점포에 관한 업무”로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 공 업 과 >

- 전기사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호 개정으로 위임내용 삭제
 -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신고수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위탁
 - 공사계획변경명령업무는 폐지

< 치 수 과 >

- 지방·준용하천의 하수를 이용한 죽목의 유송 또는 선박의 운항허가에 관한 사항중 2개시군이상 걸치는 경우에는 도에서 관장함이 타당하여 시군 위임에서 제외 규정 삽입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제30조제1항13호 개정으로 유·도선 요금.운임사항이 직접 시군에 위임되어 본조례로 위임한 내용 삭제

< 교통행정과 >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동사업 및 시설 준공검사를 하는 시군에 위임

□ 근 거 법 령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제28조의2, 제40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 제54조의2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 전기사업법 제32조, 제41조, 제42조, 제63조 등
- 하천법 제25조
-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 등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관리과 소관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환경관리과	8	◦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을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조
	9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신고등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의2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환경지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환경지도과	1	◦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됨) 가. 개선명령 나. 조업정지명령등 다. 시설의 이전명령 등 라. 조업정지명령, 허가의 취소 마.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전기, 수도의 설치 및 공급중단 요청	소음·진동규제법제15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19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환경지도과		바. 환경관리인 변경명령	동법 제22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오염물질 채취, 검사의뢰등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3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소음.진동규제법제25조
	4	○.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동법 제27조
	5	○.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관리	동법제28조,
	6	○. 자동차운행의 규제	동법 제30조
	7	○.방음시설 설치 및 설치 요청	동법 제31조
	8	○ 생활소음.진동규제	동법 제23조
	9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	동법 제26조,
	10	○. 이동소음의 규제	동법 제26조의 2
	11	○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 사항 (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사항은 제외) 가. 운행차 점검 실시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나.운행차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수리	소음.진동규제법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12	○ 보고 및 검사등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
	13	○ 청문 (단, 지방환경관리청장의 권한 제외)	동 법 제54조
	14	○ 과태료의 부과·징수 (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관리청장의 권한 제외)	동 법 제61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환경지도과	15	○환경감시원의 일명	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
	16	○생활악취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17	○보고 및 검사등 (단, 지방환경관리청장의 권한 제외)	동 법 제49조
	1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조사	동법 제8조의 2
	19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동법 제28조의2
	20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소음·진동규제법제48조 대기환경보전법제40조
	21	○년차보고서의 제출	소음·진동규제법제54조 의2
	22	○ 청문 (단, 지방환경관리청장의 권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제52조
	23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동 법 제28조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 법 제29조
		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동 법 제31조제3항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동 법 제32조
		바. 휴업·폐업등의 신고 수리	동 법 제42조
		사. 폐기물 재생처리신고 수리	동 법 제44조의 2
		아. 청 문	동 법 제57조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 법 제63조 제3항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경 제 과	1	○대규모점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영업개시등의 신고 다. 개설자의 지위승계등 라. 등록의 취소등 마. 개설자등에 대한 권고 바. 공공법인등에 대한 권고 사. 지정명령 아. 청문 자. 보고조사 차. 수수료·과태료의 부과징수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동법 제12조, 동법시행 규칙 제6조,제7조,제8조 동법제15조,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 동법시행 규칙제10조제2항 동법 제21조, 동법시행령제22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제56조 제1항,제2호 제3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41조,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동법제59조,제64조, 동법 시행령제43조, 동법시행 규칙 제29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공업과 소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공 업 과	3	○ 10만V미만으로서 전기수용설비 500kw미만 및 발전용량 200kw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확인점검 나.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다. 수리·개조·이전명령, 사용정지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41조제2항 동법 제63조 동법 제42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치수과소관 제36호를 삭제하고,“제37호 내지 제47호”를 “제36호내지 제46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치 수 과	11	○ 지방·준용하천 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가. 유수의 점용 나. 토지의 점용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마.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바. 토석·사력 기타 하천산출물 채취 사.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 아. 식물의 재식	하천법 제25조제1항 제1호 동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25조제1항 제3호 동법 제25조제1항 제4호 동법 제25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25조제1항제6호 동법 제25조제1항제7호 동법 제25조제1항제8호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자.하수를 이용하는 죽목의 유송 또는 선박의 운항 (2개시군이상 관련사항 제외) 차.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동법 제25조제1항제9호 동법 제25조제1항제10호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교통행정과 소관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교통행정과	48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도시교통촉진법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교통영향평가지침제40조제1항, 제2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